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04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이기헌・박지원・신장식

조계원 • 양문석 • 박은정

박해철 • 민형배 • 박홍근

김영환 · 정을호 · 박지혜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 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단서).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제2 호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동물학대행위 관련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벌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u> 등</u>) ①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u>해당하는</u> 경우에는 허	-해당하거나 제2호를 위반하여			
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u> 3회 이상 처벌을 받은</u>			
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